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

◎ 건설부령 제145호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1974년 8월 17일

건설부장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중 “(이하 “영”이라 한다)”를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로 한다.

제 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조의 2 (건축물 및 공작물의 종류 및 규모)

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수용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과 그 관리용 건축물, 문화재 시설(복원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그 문화재 시설의 관리용 건축물, 새마을회관, 보건소, 진료소, 경찰관파출소 및 초소
2. 국민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의 증축
3. 화약류, 유류 및 석탄의 저장시설과 그 관리용 건축물.
4.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는 다음의 건축물

가. 우마사

1 가구당 각 100m² 이하 또는 조지 조성면적의 1,000분의 5 이하일 것.

나. 계사 및 돈사

1 가구당 100m² 이하일 것.

다. 뇌비사

1 가구당 100m² 이하일 것.

라. 잡 실

상전 조성면적 2,000m² 당 50m² 이하 또는 뽕나무 1,800주당 50m² 이하일 것.

마. 창고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저장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그 토지면적의 2,500분의 1 이하일 것.

바. 관리용 건축물

경지, 과수원 기타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 면적의 1,000분의 5이하로서 100m² 이하일 것.

5. 주택용 건축물의 동일규모 안에서의 개축.

재축 및 증축(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을 포함하여 100m² 이하에 한한다)

6. 비주택용 건축물의 동일규모 안에서의 개축 또는 재축.

7.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사격연맹이 태능선수촌 또는 태능사격장안에서 건축하는 선수 훈련용 건축물

8.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 수출품 생산 및 가공공장 기타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장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승인하는 시설의 증축(건축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은 증축될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9. 제 2조의 3 제 3호 및 제 4호에 필요한 건축물 및 공작물

10.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 초급대학 구내에서 설치하는 기술 훈련시설

11. 대구연초시험장의 증설

12. 교정시설의 증축 또는 이전

제 2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조의 3(토지형질변경의 범위)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농림, 수산업을 위한 개간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석의 채취
3.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되는 지하자원의 개발
4. 녹지조성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위한 형질변경

제 4조 중 “영”을 “시행령”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시행중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